

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권재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136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	2020. 12. 1.
발 의 자	권재경, 김종두, 최정환, 이재운, 이흥희, 신재화, 심재수, 권순모, 박수자, 김향란, 표주숙 의원

1. 제안이유

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입장료를 타 시군의 입장료 수준에서 적정하게 설정하고,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입장료 변경(안 별표1)

구분	요금	적용
일반	3,000원	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.		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
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7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산림과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0. 12. 1. ~ 12. 7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1. 입장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요금	적용
일반	3,000원	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